

「평창군영농기술훈련원설치조례 폐지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5. 9. 3(목) 평창군수(기술지원과장)

나. 회부일자 : 2015. 9. 8(화)

다. 상정일자 : 2015. 9. 14(월) 제212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
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기술지원과장 김영기)

- 평창군영농기술훈련원설치조례 설치 근거인 “영농기술훈련규정” 폐지
- 농업인에 대한 교육 훈련은 “농촌진흥법” 제19조에 의해 농촌진흥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로 명시되어 있으며 현행 조례는 유명무실하여 폐지하고자 함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이용섭)

- 본 조례는 과학영농과 농촌생활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보급을 위하여 영농기술 훈련원을 설치하여 그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1978년 8월 10일 제정된 조례 임.

- 본 조례 설치 근거인 농촌진흥청 훈령이 폐지되었고, 농촌진흥법에서 자치단체 역할로 교육훈련사업이 명시됨으로써, 유명무실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,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영농기술훈련원설치조례 폐지조례안 1부.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영농기술훈련원설치조례 폐지조례안

평창군영농기술훈련원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